

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8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4. 27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령과 같이 대상자 표현방식을 통일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19조제1항제3호 중 “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(가)족”을 “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”으로 수정함(안 제19조제1항제3호).

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9조제1항제3호 중 “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(가)족”을 “보훈보상대상
자, 그 유족 또는 가족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9조(수수료) ①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9조(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<u>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(가)족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9조(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수수료) ① 「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9조(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<u>보훈보상대상자</u>, 그 <u>유족 또는 가족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